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Korean Academy of Distribution & Logistics;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 및 산업의 유통정책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고 산관학의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요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개발 연구 및 자문
-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연구지 발간
-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의 발굴 및 시상
- 본회의 목적에 동조하는 국내외 학회들과의 교류 및 제휴 확대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당해 연도 학회장의 근무처 소재 시, 도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장의 근무처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대학에서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와 이에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와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대학에서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4. 업계에서 유통, 물류, 프랜차이즈 사업을 건전한 경영철학으로 탁월하게 경영하고 있는 자
5. 이사회에서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회가 결정된 개인으로 한다.

제8조 (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 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연구소, 정부기관 또는 기업체 등의 기관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본 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4.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 정회원은 총회에서 약정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이 자진 탈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경우
3.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총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1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0일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15인
2. 회장 1인, 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15인, 상임이사 5인, 이사 10인 이상 70인 이하, 감사 2인

제13조 (고문)

고문은 전임회장을 자동으로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임기 만료 전에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회장을 보좌한다.
5.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6. 감사는 추천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사무를 맡는다.

제15조 (상임이사, 이사, 감사, 편집위원장의 선임)

1.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기준으로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편집위원장 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

1.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그리고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3. 간사 및 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한다.

제4장 기 관

제1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③ 회원1/4 이상이 서면으로써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
3. 정관변경 및 본 회 해산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이사회)

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정회원의 자격심의
2. 총회에 제출된 안건의 심의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회원 회비의 결정
5. 편집위원회 등 기구 운영 및 시행규약의 승인 변경
6.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
7. 추천위원의 추대결의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고문 추대
10. 사무국의 규정 개정
11. 기타 사항

제23조 (의결방법)

본회 기관의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24조 (학회지발간)

본회는 학회지 “유통물류정책연구”를 연 1회 이상 발간한다.

1.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2. 편집위원회의 내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25조 (연구발표회)

본회는 연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제26조 (기타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정책 포럼 개최
2. 산관학협동 학술 경연회
3. 외국과의 연구교류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제27조 (위원회 및 지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의 학술지인 “유통물류정책연구”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본회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및 지회

제2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 활동 및 연구 활동이 활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 선임위원회 위원장(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6장 회 계

제29조 (재정 및 관리)

1.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 입회비와 연회비, 찬조금, 기타 내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전항의 재산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0조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과 당해 연도의 결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이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한다.

1.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본 회의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 기타 필요한 유급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를 제정한다.

제8장 부 칙

1. 본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3. 초대회장단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장 보 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 위 사단법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10 년 4 월 8일

사단법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